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5월 19일)
상정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5월 19일)
수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)

□ 제안이유

-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총괄
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도록 함.(안 제3조제2항)
- 나. 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함.(안 제4조

제2항)

다.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, 위원
위촉대상의 범위를 조정함.(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)

라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.(안 제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토론과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정원을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하면 위원회 운영에 제약이 없는지?</p>	<p>○ 국장 2인, 의회의장 추천 2인, 전문가 6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 하겠음.</p>
<p>○ 위원구성에 있어 당초 위촉된 노인회 지회장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며, 문제제기는 없었는지?</p>	<p>○ 노인회지회가 기금수혜단체임에 따라 기금사업을 심의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안임.</p>
<p>○ 제4조 제4항 3호 위원구성에 있어 “기금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”으로 되어 있으나, 위원회 기능상 “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</p>	<p>○ 포괄적인 개념이나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.</p>
<p>○ 위원위촉시 통합기금을 예탁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?</p>	<p>○ 반영하겠음.</p>
<p>○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는가?</p>	<p>○ 전문가, 실무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위를 국장으로 조정함.</p>
<p>(노인복지팀장)</p>	
<p>○ 기금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?</p>	<p>○ 노인회지회 사업으로 전액 사용함.</p>
<p>○ 규칙으로 정해진 ‘기금신청 대상자는 노인회지회로 한다’는 조례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데?</p>	<p>○ 향후 규칙을 개정하겠음.</p>
<p>○ 본 조례를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면 기존 위원의 임기는?</p>	<p>○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으나, 위원 대부분이 금년 8월이면 만료되므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봄.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수정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242호
의결 년월일	2008. 5. 23 (제143회)

제안년월일 : 2008. 5. 19.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 위촉대상중 전문가의 위촉범위를 정한 “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”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석되고, 특히 기금의 예탁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며,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심의·확정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
- 위촉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“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”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 위촉대상중 전문가의 위촉범위를 정한 “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”을 “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”으로 수정함.(안 제4조4항3호)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 제4항 3호를 “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” 으로 수정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조례안과 같음.』

신·구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.	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기금총괄업무담당국장 2.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. <u>기금</u>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	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개정조례안과 같음) ② (개정조례안과 같음) ③ (개정조례안과 같음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기금총괄업무담당국장 2.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. <u>기금 및 노인복지</u>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성”을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”을 “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(부천시 노인복지기금)로 관리한다”를 “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5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기금총괄업무담당국장
2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
3.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마련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복지기금의 조성) ① <u>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2조(복지기금의 조성) ① <u>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<u>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(부천시 노인복지기금)로 관리한다.</u></p> <p>② <u>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·운용한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<u>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10명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업무담당국장, 노인복지업무담당국장, 경제업무담당국장, 부천시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, 대한노인회부천시구지회장,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.</p>	<p>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총괄업무담당국장 2. 부천시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.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
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(생략) 3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	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<p>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</p> <p>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8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제10조(기금지급대상 사업)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1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</p>

〈관계법령발췌서〉

○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6조(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) ①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식품진흥기금 중 「식품위생법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